



글렌데일 공공명령. 2020-07호

글렌데일 비상사태 권한

발급일: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부의 조치

(필수 서비스 근로자와 고객을 위한 얼굴 가리개)

국제적, 국가적, 주정부, 지방정부 보건국과 정부기관은 신종(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2019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며, 감염자는 가벼운 병에서 중증질환과 사망까지 다양한 결말을 겪었다.

2020년 3월 4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적 자원을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정부 기관과 부서에서 이미 시행 중인 비상사태 조치를 공식화하였으며, 주정부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이사회와 공공보건국은 국가 전역에 코로나바이러스의 늘어난 확산에 대응하여 지방과 공공건강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2020년 3월 13일, 미합중국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비상사태 기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0년 3월 16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글렌데일 지방법 2.84장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 시행을 선포하였고 특정한 공공 장소의 봉쇄와 출입 제한을 명령하였다

2020년 3월 1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관은 코로나19명령의 통제를 위해 자택대피령을 발령하였고, 행사와 모임, 사회적 거리두기, 비필수업종과 구역의 폐쇄, 그리고 개방하는 필수업종의 목록범주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정하였고, 2020년 3월 21일에 제한된 모임을 수정하였고 비필수업종과 필수업종의 범주를 바꾸었다.

2020년 3월 21일, 주지사는 자택대피령과 비슷한 행정명령을 발부하였다.

글렌데일 시는 손 세정, 호흡 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노력을 다시 두배로 하였다. 지역사회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의료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막기 위해 시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고를 돕기 위해, 글렌데일 지방정부법 2.84장에 의거한 비상사태 서비스국장의 비상사태권한으로, 비상사태로 피해입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적절한 사안의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발령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는 글렌데일 시의 특정 시설에 대한 임시 제약을 명령한다.

시 공무원과 필수근로자는 이 비상사태동안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필수 근로자 중 몇명은 노출될 초대형 위험에 처해있다. 의료진과 응급요원은 보건관의 조언을 따르고 수술용 마스크나 N95호흡기 등의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다른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필수근로자는 감염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의료용 마스크가 전세계적으로 부족하고, 보건관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호흡기 침방울의 확산을 막으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 의료근로자가 의료용이 아닌 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갈수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글렌데일 지방정부법의 2.84장에 의거한 공권력으로, 비상사태서비스국장은 2020년 4월 10일 밤 11시59분부터 지방 비상사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음 명령을 발령한다.

1항.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필수업종으로 간주되는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하면서 코와 입을 가리는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명령은 2020년 3월 21일 날짜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 자택대피령("LA 카운티 명령")의 13문단에 의거하여 다음 조항이 다음 필수업종의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a) 통조림, 말린 음식, 싱싱한 과일과 야채, 애견용품, 물, 신선한 고기, 생선, 가금류, 가정용품(청소물품이나 개인 생활용품) 등을 소매로 판매하는 식품점, 공인 파머스 마켓, 농장과 식품 가판대, 수퍼마켓, 푸드뱅크, 편의점, 창고형 가게, 기타 시설. 이것은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와 식품이 아닌 물건을 파는 가게, 그리고 안전, 위생, 주거지에서 필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이다.

(c) 경제적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범죄조직 예방과 개입, 가정폭력, 노숙자 서비스 기관 등)에게 음식, 대피소, 복지서비스, 생필품을 제공하는 단체와 사업체

(e) 주유소, 자동차 공급업체, 모바일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소(소매업체나 중고자동차 딜러십과 옆에 있거나 관련이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포함하나 제한하지 않음), 자전거 수리소, 관련 시설.

(f) 은행, 크레딧 유니언, 금융기관, 보험회사

(g) 철물점, 묘목장; 건물용품점

(h) 배관공, 전기공, 해충 구제업자, 경비/수위, 핸디맨 서비스, 장례식 직원과 장의사, 이사 서비스, HVAC 설비공, 목수, 식물서비스, 나무관리업, 조경사, 정원사, 건물관리자, 안전, 위생, 건물의 필수적 운영과 기타 필수업종의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보안원



- (i) 우체통 등의 우편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 (j)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조건으로 원거리 학습을 진행하고, 픽업 식사를 제공하거나,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칼리지, 대학교)
- (k) 빨래방, 드라이크리너, 세탁소 제공인
- (l)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식당과 요식업체임, 그러나 배달, 드라이브 스루, 포장음식만 됨. 실내와 실외 식사는 허가하지 않는다. 2(a)-(d)항에 의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한 병원, 양로병원, 기타 면허있는 헬스케어 시설의 카페테리아, 매점, 식당은 식당에서 먹는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
- (m) 재택근무자가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컴퓨터 용품을 공급하는 업체
- (n) 필수업종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 (o) 식품, 음식, 물건, 서비스를 주거지, 필수업종, 헬스케어 운영, 필수 기반시설에 직접 배송하고, 트럭으로 운송하고, 운반하고, 물류지원을 제공하는 비 제조업체, 운송업이나 배송업
- (p) 항공사, 택시, 합승서비스, 그리고 이 명령으로 특별히 허가된 목적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운송인
- (r) 노인, 성인,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재택 간병시설
- (s) 노숙자, 장애인, 노인, 성인, 어린이, 동물을 위한 주거용 시설과 보호소
- (t) 법률상 위임된 활동에 준하여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 법률서비스, 급여나 회계서비스 등의 전문서비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그에 부수적인 것 등인 허가증 발급, 검사, 건축, 주택 소유권의 이전과 기록
- (v) L.A. 카운티 명령에서 면제된 직원들은 L.A. 카운티 명령의 약관에 의거하여 허가받고 근무해도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원
- (w) 호텔, 모텔, 공유 임대유닛, 비슷한 시설
- (x) 공사, 운영, 검사, 공사장의 유지와 공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공사인부(주택 공사 포함)

2항. 현재 얼굴 가리개는 의료용 마스크나 N95 호흡기가 아니어도 되지만, 스카프나 두건 등의 천 가리개도 된다. 이러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재사용할 수 있는 얼굴 가리개를 물세탁해야 한다.(최소한 하루 한번) 일회용 얼굴 가리개는 쓰레기통에 적절히 폐기해도 된다.

3항. 이 공공명령 1항에 규정된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주는 직원이 최소한 30분 동안 손을 씻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본인 부담으로 비 의료용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필수 청결용품이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보건국이 권고한 손 세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고용주 부담으로 제공한 필수 위생품이 비축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고용주는 고객, 방문객, 직원들이 서로간에 가능한 6피트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4항. 이 공공명령의 1항에 규정된 사업체와 단체의 고객과 방문객은 직원과 고객을 위한 추가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부 코와 입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얼굴 가리개는 의료용 마스크나 N95 호흡기가 아니어도 되지만, 스카프나 두건 가리개 등의 천 가리개도 된다.

5항. 이 공공명령의 1항에 규정된 사업주나 운영자는 이 명령으로 규정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1항의 모든 소매업체는 판매 시점에서 계산원과 고객을 분리하는 플렉시 글라스를 설치할 것을 권한다. 이것이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6항. 코로나바이러스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치안관은 합법적으로 구금된 개인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이 얼굴 가리개가 없으면, 치안관이 제공하게 된다.

7항. \$1,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형으로 규정한 글렌데일 지방법원 1.20장에 의거하여 상기 공공명령의 위반을 기소하기 위해 시 검찰청에 회부될 수 있다. 이 명령을 집행하면서 경관은 각자 재량을 사용하고 명령의 의도를 항상 염두에 둔다. 위반사항은 글렌데일 지방법 1.24장의 조항으로 집행하고, 이에 규정한 집행방식과 함께 첫번째 소환장은 \$400의 벌금, 두번째 소환장은 \$1,000, 세번째 소환장은 \$2,000로 규정한다.



8항. 이 명령의 관, 문장, 조항, 구절, 단어나 사람, 구조물, 상황에 이 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거나 위헌이면, 그러한 판결은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의 타당성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항. 이 명령은 2020년 5월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_____ 2020년 4월 10일
시간: 1:42 P.M.

서명인: Yasmin K. Beers
Yasmin K. Beers(예즈민 K. 비어즈)
비상서비스 국장

양식을 승인함:
MICHAEL J. GARCIA(마이클 J. 가시아), 시 검사

서명인: Michael J. Garcia

직분: 시검사

날짜: 2020년 4월 10일